

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9월 12일 / 양윤제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9월 1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(2024. 9. 23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양윤제 의원)

가. 제정사유

○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차량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다. 관련법령
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 및 제6조
- 「주차장법」 제2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2024년 9월 기준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은 3,450명으로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1)에 따라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우선 배려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음.
- 2023년 2월 국가보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“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 협조” 공문(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-597)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고, 현재 전국 88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.
- 안 제4조제1항에 지정된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인 주차단위구획의 총

-
- 1)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장은 포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 중인 11개, 총21개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지원과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조례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7조에 규정한 행정지도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, 읍면동 회의 및 SNS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